◎ 국가데이터처 고시 제 2026 - 725호

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
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(협의)를 고시합니다.

2026 년 10 월 29일
국 가 데 이 터 처 장

1. 통계의 명칭 : 미팅산업현황조사
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한국관광공사
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 : 제314007호 [2026.10.19.]
4. 통계작성의 목적 : 국내 미팅 개최 규모와 관련 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MICE 정책 수립,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, 학계·연구기관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
5. 통계작성의 대상
 - 대상 : 사업체/사업체
 - 목표모집단 : 조사 대상 기간 중 미팅이 개최된 회의 개최시설(사업체)
 - 조사모집단: 사전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미팅 개최를 위해 행사장(혹은 회의실)을 임대/대관한 것으로 확인된 개최시설(사업체)
 - 표본추출틀: MICE 전문가 집단 자문을 통해 정의된 회의 개최시설 중 조사년도에 회의 개최를 위해 임대/대관 활동을 영위한 개최시설(사업체)
 - 대상 범위 및 규모 : [미팅의 정의] 참가규모:전체 10명 이상(내·외국인 제한 없음), 개최기간: 4시간 이상, 내용: 정부/공공/학술/기업회의
 - 대상지역 : 전국
6. 통계작성의 주기 : 1년
7. 통계작성의 방법 : 조사통계/일반통계